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87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송언석
김미애 · 이상휘 · 김용태
김승수 · 김태규 · 이양수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요금 분할납부의 신청,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체납전기요금의 분할 납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요금 분할납부의 신청,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u>

	<u>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